

• 보도일 : 2024년 10월 17일(목)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문의처 : 성과보상처 김태환 팀장(055-751-2980), 이연우 팀장(055-751-2971)

중진공, 10월 22일부터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신청 접수

- 중기부 · 중진공 · 기업은행 · 하나은행 협업형 정책금융상품 출시 -
- 중소기업 재직자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중진공)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한 중소기업 신청을 10월22일(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20% 수준의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만기 시 세액 공제 등의 세제 지원으로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높았던 기업부담금과 핵심인력 중심으로 지원하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금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중진공은 공제상품 가입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 최초로 은행 협업형 상품을 설계하여 최대 연 2.0%의 은행우대금리와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 9월 19일(목)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사전청약식 행사도 진행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절차는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10월 22일(화)부터 중소기업이 먼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sbcplan.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가입 희망 재직자는 10월 24일(목)부터 신청 승인 중소기업에서 기업 지원금 1회차 납입이 확인된 이후,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적금 가입의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지점을 통한 적금 가입은 10월28일(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협력하여 신규 공제상품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TV
바로가기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김태환 팀장(☎ 055-751-2980), 이연우 팀장(29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개요

- (개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5년만기, 월 10만원 ~ 50만원 내에서 선택 가입(1만원 단위 선택)
- (구조) 근로자 납입금 + 기업 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월 납부금 (a)	가입기간 (b)	매칭비율 (c)	기업지원금 (a×b×c)	예상 만기금
10만원	60개월 (5년)	20%	120만원	806만원 (원금 600만원)
20만원			240만원	1,612만원 (원금 1,200만원)
30만원			360만원	2,418만원 (원금 1,800만원)
40만원			480만원	3,223만원 (원금 2,400만원)
50만원			600만원	4,029만원 (원금 3,000만원)

* 기업지원금 및 5년간 이자를 합하면 근로자 납입금 대비 134%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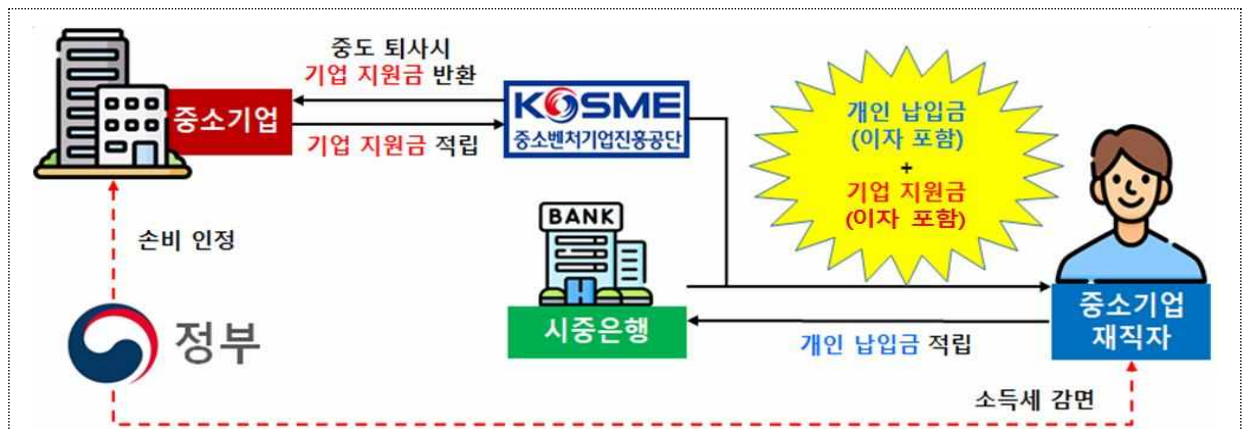
- (가입혜택) 만기까지 해당기업 재직 시 적립금 및 기업지원금을 지급* 하고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 기업지원금은 중진공(성과보상기금)에서 관리 후 만기 시 계좌정보 교류를 통해 지급

□ (가입절차)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방법 >



Q. 중소기업의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①가입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②휴·폐업 중인 기업(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③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및 ④기타 공제약관 제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부당행위 해당 기업 등은 가입이 제한됨

Q. 중견기업, 대기업도 가입 가능한가요?

A.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가입기간 중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공제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이 유지됨

Q. 재직자의 가입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단, ①가입하려는 은행에 이미 본 상품의 계좌가 있거나 ②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③부정수급을 안날부터 2년이 미경과 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자는 가입이 제한됨

Q.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도약계좌 등)이나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를 참여하고 있어도 가입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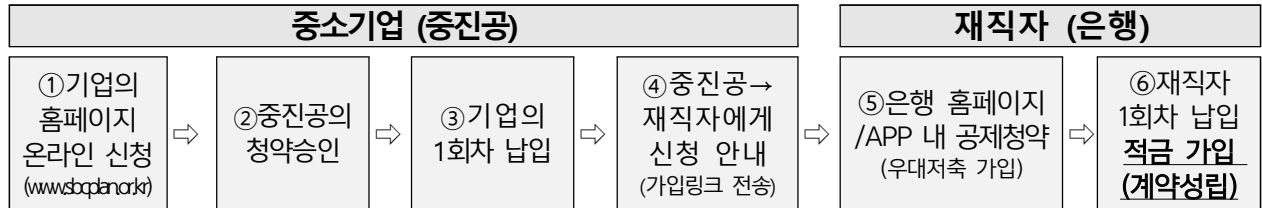
A.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Q. 각 협약은행에 동시 가입이 가능한가요?

A. 협약은행(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당 각 1개의 적금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최대 총 2개의 적금계좌)

Q. 공제 가입절차가 궁금합니다.

A. 공제 가입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① (기업→중진공) 청약신청, ② (중진공) 검토 및 청약승인,
- ③ (기업) 1회차 납부, ④ (중진공→재직자) 신청링크(카카오 알림톡) 송부
- ⑤ (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사전신청
- ⑥ (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적금 계좌개설

Q. 기업 청약신청 세부절차가 궁금합니다.

A.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 ①회원가입 및 로그인(기업인증서 필요)→ ②청약신청→ ③은행 선택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④기업/재직자 정보 입력→ ⑤필수서류* 업로드→ ⑥최종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Q. 상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입요건 검토, 세제혜택, 청약승인 관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재직자 우대저축(적금) 가입 관련은 각 은행(IBK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0079))으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문의내용	가입요건 검토, 세제혜택, 청약승인 등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재직자 적금) 가입	
문의처	1588-6259	1566-2566	1599-0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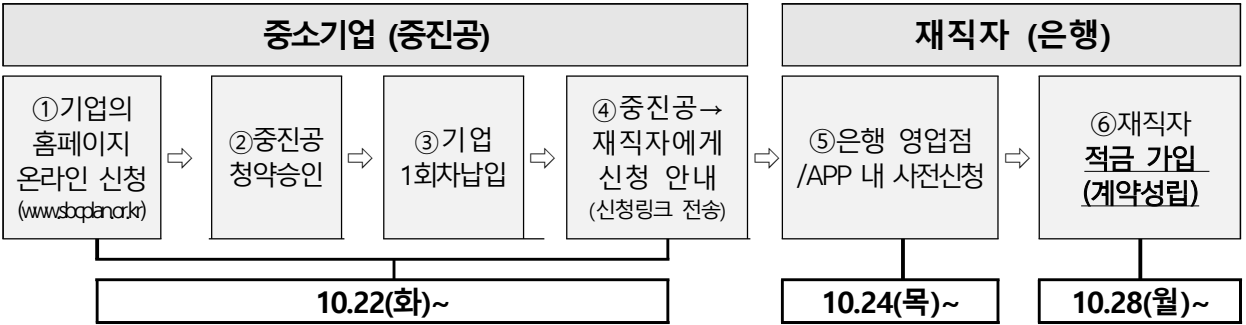
중기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보도('2410.17) 관련 추가 설명자료

(2024.10.17., 중진공 성과보상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절차 프로세스 안내

(가입절차 관련)

- **(중소기업)** 10.22(화)부터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
* 내일채움공제 사이트 : www.sbcplan.or.kr
- **(재직자)** 10.24(목)부터 신청 승인 중소기업의 기업지원금 1회차 납입 확인 후,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적금 가입의사 신청
* 신청 후, 재직자의 중소기업 재직여부 확인 후에 적금가입 완료(2영업일 내외 소요)



- ① (기업→중진공) 청약신청, ② (중진공) 검토 및 청약승인,
- ③ (기업) 1회차 납부, ④ (중진공→재직자) 신청링크(카카오 알림톡) 송부
- ⑤ (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사전신청
- ⑥ (재직자→은행) 은행(영업점/App) 적금 계좌개설

각 기관별 상품 관련 문의 연락처

(중진공) 가입요건 검토, 세제혜택, 청약승인 관련(1588-6259)

(은행) 재직자 우대저축(적금) 가입 관련

- IBK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0079)

구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문의내용	가입요건 검토, 세제혜택, 청약승인 등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재직자 적금 가입
가입처			
문의처	1588-6259	1566-2566	1599-0079